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2일
제출자 :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19. 9. 26)되어 동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2. 주요내용

가. 집행 기간 : 2020. 1. 1. ~ 6. 30. ※ 신규 인력 '20.1.28. 입사

나.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	집행액			잔액	집행내역
		1분기	2분기	계		
인력 증원 봉급 예비비	608,328	98,861	153,262	252,123	356,205	신규 인력(15명) 인건비 지출분

3.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제안근거. 끝.

※ 작성자 : 서울관광재단 기획예산팀 노준식 팀장 (☎ 3788-8137)
기획예산팀 강민경 대리 (☎ 3788-8125)

불 임

제안근거 _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신설 2019. 9. 26>

참고_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공기업담당관-11501, 2019. 9. 3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2019.9.26.)

서울특별시 2019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19.9.20.)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9.9.26.(목)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출자·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조례 제22조의2제3항 신설)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사항(서울시보 제3543호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서울시출연기관

09/27

주무관 김규동 출자출연담당관 김경아 출기금담당관 경인원

참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501 (2019-09-30) 접수 기록예산팀-1077 (2019.10.2.)
우 045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55 전송 02-2133-0864 / kkd0127@seoul.go.kr / 공개